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0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3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생활환경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자구 수정 및 서울시의 분리배출 기준 개정 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구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(안 제10조제3호)
-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변경(안 제12조 별표1)
-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조례 자구 수정(안 제14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사항 및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10조에서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12조 관련 별표1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‘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(안)’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,
 - 안 제14조에서는 「폐기물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정비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따른 자연재난이나 감염병과 같은 사회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7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3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(시행 '21. 7. 6.)에 따른 조례 자구 수정 및 서울시의 분리배출 기준 개정 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구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(안 제10조제3호)
- 나.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변경(안 별표1)
- 다.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조례 자구 수정(안 제1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2. 1. 20. ~ 2. 9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

제14조제3항 중 “수 있으며,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”를 “수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(제12조 관련)

1.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

-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(대형감량기, RFID종량기 등)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
-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·된장·고추장 등은 물에 행구어 배출
- 통무, 통배추,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과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(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)

2.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

구 분	품 목
채소류	쪽파·대파, 미나리 등의 뿌리
	고추씨 등
	양파·마늘·생강·옥수수 껍질 등
	고추대, 옥수수대, 마늘대 등
과일류	호두·밤·땅콩·도토리·코코넛·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
	복숭아·살구·감 등 핵과류의 씨
곡 류	왕겨
육 류	소·돼지·닭 등의 털 및 뼈다귀
어패류	조개·소라·전복·꼬막·멍게·굴 등 패류 껍데기
	게·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
	생선뼈
	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
알껍질	달걀·오리알·메추리알·타조알 등 껍데기
찌꺼기	각종 차류(녹차 등) 찌꺼기, 한약재 찌꺼기
기타	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, 비닐(봉지 등), 병뚜껑, 나무이쑤시개, 종이, 호일, 빨대, 일회용스푼, 플라스틱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, 유리조각, 금속류, 돌, 끈, 의류, 비닐류 등

※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 이 불가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14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·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<u>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14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수 ----- ----- -----.</p>